

#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
▶ [시행 2014.10.22.] [총리령 제1100호, 2014.10.22., 일부개정]

## 【제 · 개정이유】

### [일부개정]

####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통시장에서 닭 · 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서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5651호, 2014. 10. 8. 공포 · 시행)됨에 따라, 닭 · 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하도록 하고,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 · 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그 위생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## 【제 · 개정문】

### ◎ 총리령 제1100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2014년 10월 22일

국무총리 (인)

###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10을 제7조의11로 하고,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7조의10(닭 · 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)**  
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1. 닭 · 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
  - 가. 세균 · 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
  - 나.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
  - 다.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
2. 법 제6조에 따른 닭 · 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 ·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
3.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 · 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

별표 2의3의 제목 중 “제7조의10”을 “제7조의11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